



# 증오범죄 관련 미국연방법규

(미국 연방 수사국 (FBI)  
(민권 업무 전담반 (Civil Rights Unit))

## 18 미국 연방 형법 245조와 18 미국 연방 형법 249조 비교(18USC§245 and 18USC§249)

245	249(a)(1)	249(a)(2)
계획적인 경우	계획적인 경우	계획적인 경우
완력을 사용하거나 완력으로 위협하는 행동	위험한 무기로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도하는 행동	위험한 무기로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도하는 행동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는 행동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국을이유로 하는 행동	종교*, 출신국, 성별, 동성애자, 성소수자, 또는 신체장애자들을 이유로 하는 행동
피해자가 연방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하는 행동	제한 없음.	각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함.
13 차 수정	13 차 수정	미국연방헌법 1 조 8 항



# 증오범죄 관련 미국연방법규

미국 연방 수사국 (FBI)  
민권 업무 전담반 (Civil Rights Unit)

## 18 미국 연방 형법 247조와 42 미국 연방 형법 3631조 비교(18USC§247 and 42USC§3631)

247(a)(1)	247(a)(2)	247(c)	3631
고의적인 경우	고의적인 경우	고의적인 경우	고의적인 경우
종교 재산에 대한 훼손, 손상, 파괴 행위	타인에 대한 완력에 의한 방해나 위협 행위	종교 재산에 대한 훼손, 손상, 파괴 행위	완력에 의한 강요, 협박, 간섭, 또는 상해 행위
재산이 종교적 성격이란 이유로 저지르는 행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적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종교적 재산과 관련된 개인의 인종, 피부색, 민족적 특성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지체장애, 가족의 신분과, 주택의 구입, 거주, 임차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
각 주 사이의 상거래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함.	각 주 사이의 상거래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미국 헌법 1 조 8 항	미국 헌법 1 조 8 항	13 차 개정	13 차 개정

